

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손 자 용

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1년 9월 9일 김영주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충북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충북문화재단의 재산(기금)으로 전액 출연하는 등 충청북도 문화예술정책 변화에 따라 기금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고,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
 - 위원회 명칭 변경
: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→ 충청북도문화예술위원회
- 조항의 폐지
 - 문화예술진흥기금관련 조항의 폐지
: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충북문화재단의 재산으로 전액 출연함에 따라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관련 조항을 폐지함

○ 부칙에 기금의 설치·관리·경과조치 명시

- 부칙 제2조 : 충북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충북문화재단에 전액 출연하고 이를 폐지함을 명시함.
- 부칙 제3조에 경과조치를 명시함

4. 검토의견

이번에 전부개정하는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의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, 충북문화재단의 출범에 따라 변화하는 문화예술정책의 변화에 맞춰 조례를 수정하고 하려는 것으로서,

주요 내용으로는

○ 안 제2장에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충청북도문화예술위원회로 수정하고,

○ 제4장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며,

○ 부칙 제2조에

- 기금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은 충북문화재단 설립시 충북문화재단에 전액출연하고 이를 폐지하며, 2011년도 당해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지원 사업비는 2012년 3월 31일까지 정산을 완료한 후 그 잔액을 출연하도록 명시하였고,

○ 부칙 제3조에 경과조치를 두어,

- 충북문화재단이 설립·운영될 때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하였음.

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애 맞게 관련 위원회 용어를 변경하고, 충북문화재단 설립을 앞두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전액 출연하는 데 있어 필요한 조치를 명확히 명시하며, 충북문화재단으로 기능 이전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전액 출연에 따라 용도가 사라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폐지하고, 기금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문을 체계적으로 수정하고 현실성을 갖추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 끝.